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6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

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39

나. 제 안 자: 황영호 의원 외 10명

다. 제안일자: 2019년 6월 4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보조금 지원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이용 대상을 세분하여 명시(안 제5조)

나. 환수조치의 정비(안 제9조)

다.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생활보장과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19. 6. 5. ~ 6. 10.)　결과: 의견없음

2) 전문 및 관계법령: 붙　임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,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[1]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였고

○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,

○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음.

---

1) **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**(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, 2019. 1.)

다. 종합의견

○ 지역아동센터[2]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어,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,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맞추어,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,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보조금 환수조치, 운영위원회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---

2) 아동복지법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□ 아동복지법

제61조(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및 보장원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,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
3.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
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6조(운영위원회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
5.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6.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시설의 장
2. 시설 거주자 대표
3.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
4. 시설 종사자의 대표
5.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2.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

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